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

운영위원회(구의회사무국)

의안번호	99
제 출 자	양 순 임 의원 외 11명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유 천 곤

1. 제안이유

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국외출장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성북구 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국외출장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1호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를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로 변경하고, 제4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으로 변경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를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변경함.
- 검토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지방의회 의원 외교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